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 요구·권고

제 목 지하수 조례 미제정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서구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합동감사 시 지하수 개발·이용자로부터 확보한 재원을 지하수보전·관리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자 지하수 조례개정 및 지하수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1. 지하수 조례 미제정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도, 광주광역시 서구는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 573,995,140원을 부과·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지하수 조례

미제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구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2013년 1,930천원, 2014년 1,742천원, 2015년 4,432천원, 2016년 990천원, 2017년 8월까지 1,000천원 등 최근 5년 동안 10,094천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위 관서는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10,094천원을 일반예산에서 충당하여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였다.

[표1] 지하수 관련 집행 비용

(단위 : 원)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8
10,094,200	1,930,000	1,742,200	4,432,000	990,000	1,000,000

※ 자료 : 광주광역시 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표2] 지하수이용부담금¹⁾ 미부과 현황

(단위 : 톤, 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8 까지
사용량	6,752,884	1,101,819	1,366,573	1,614,158	1,592,791	1,077,543
단 가	-	85	85	85	85	85
금 액	573,995,140	93,645,615	116,158,705	137,203,430	135,387,235	91,591,155

※ 자료 : 광주광역시 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2. 지하수 관리 부적정

○○자동차(주) ○○공장(대표 ○○○, ○○○)은 2015년 위 관서로부터 ○○동 ○○번지, ○○동 ○○○번지, ○○○번지, ○○○-○번지 등 4개 복합필지에

1)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 산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한 금액

2013. 2. 4.부터 2021. 2. 7.까지 총 22개 관정에 대하여 취수량 3,650톤/일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득하였다.

위 사업장에서는 허가받은 관정별로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취수량 이내로 취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붙임]과 같이 서구 ○○동 ○○○번지에 위치한 8개 지하수 관정에서 2015. 1월~2017. 8월까지 94회에 걸쳐 365,878톤, 서구 ○○동 ○○○번지에 위치한 1개 지하수 관정에서 2015. 1월~2017. 8월까지 5회에 걸쳐 7,788톤, 서구 ○○동 ○○○-○번지에 위치한 9개 지하수 관정에서 136회에 걸쳐 538,465톤 등 총 18개 관정에서 235회에 걸쳐 912,131톤을 초과 취수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광주광역시 ○○○사업본부 ○○사업소에서 지하수 취수량 검침 및 요금납부내역을 확인하거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하수 계획취수량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허가된 계획취수량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해당 지하수 관정의 사용중지와 더불어 「지하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감사 시 지하수 계획취수량 초과 취수로 인하여 ○○자동차(주)○○공장에서 얻은 부당이익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단가²⁾에 불법취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결과, 아래 [표3]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77,531,135원의 이익이 제공되었다.

[표3] 부당 수익금액 산정

<단위 : 원>

2) 지하수이용부담금 금액 산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한 금액

불법 취수량 (제한 취수량 초과분)	단가(원)	부당 수익금액
912,131톤	85	77,531,135

※ 자료 : 광주광역시 서구 ○○과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위 관서는 ○○자동차(주) ○○공장(대표 ○○○, ○○○)에 대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15. 1월~2017. 8월까지 총 18개 관정에서 235회에 걸쳐 총 912,131톤의 지하수가 초과 취수되었고, 77,531,135원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아 계획취수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취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고발 등 적의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단위 : 톤>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8월		
	허가 취수량	실제 취수량	초과 취수량	허가 취수량	실제 취수량	초과 취수량	허가 취수량	실제 취수량	초과 취수량	허가 취수량	실제 취수량	초과 취수량
계	3,016,300	2,878,072	912,131	1,131,500	1,111,132	394,121	1,131,500	1,044,513	316,337	753,300	722,427	201,673
2공장 1호기	243,250	388,673	161,635	91,250	157,652	69,277	91,250	164,390	73,397	60,750	66,631	18,961
2공장 2호기	243,250	157,895	66,145	91,250	60,961	21,800	91,250	0	0	60,750	96,934	44,345
2공장 3호기	194,600	202,084	50,775	73,000	58,139	726	73,000	113,042	40,714	48,600	30,903	9,335
2공장 4호기	97,300	57,413	12,047	36,500	18,745	1,985	36,500	22,979	8,522	24,300	15,689	1,540
2공장 5호기	194,600	136,268	1,510	73,000	56,538	0	73,000	45,328	1,088	48,600	34,402	422
2공장 7호기	145,950	165,924	46,204	54,750	71,730	30,534	54,750	59,148	11,746	36,450	35,046	3,924
2공장 8호기	194,600	135,072	19,320	73,000	30,672	232	73,000	75,852	18,014	48,600	28,548	1,074
2공장 9호기	194,600	101,970	8,242	73,000	27,234	7,010	73,000	39,636	1,108	48,600	35,100	124
1공장 1호기	194,600	110,249	7,788	73,000	43,976	6,553	73,000	29,009	934	48,600	37,264	301
1공장 2호기	145,950	139,810	27,428	54,750	54,631	18,629	54,750	55,153	4,866	36,450	30,026	3,933
1공장 3호기	97,300	99,749	11,951	36,500	32,345	714	36,500	39,361	6,396	24,300	28,043	4,841
1공장 5호기	194,600	402,957	214,557	73,000	149,683	82,883	73,000	153,072	80,072	48,600	100,202	51,602
1공장 6호기	97,300	83,892	20,511	36,500	50,676	14,996	36,500	25,583	5,515	24,300	7,633	0
1공장 7호기	243,250	232,340	111,059	91,250	175,612	97,687	91,250	21,263	0	60,750	35,465	13,372
1공장 9호기	97,300	66,240	9,074	36,500	22,643	7,639	36,500	23,488	538	24,300	20,109	897
1공장 10호기	97,300	144,411	71,902	36,500	22,591	10,391	36,500	73,511	37,189	24,300	48,309	24,322
1공장 11호기	145,950	154,066	48,918	54,750	17,535	0	54,750	79,291	26,238	36,450	57,240	22,680
1공장 12호기	194,600	99,059	23,065	73,000	59,769	23,065	73,000	24,407	0	48,600	14,883	0

※ 자료 : 광주광역시 서구 ○○과 제출자료 재구성

※ 지하수 취수량 산정 : 1일 계획취수량(허가)에 해당 월의 일수(30일 또는 31일)를 곱하여 매월 허가된 최대 취수량 산정 후, 최대 취수량과 실제 검침 취수량의 차이를 합산하여 산정